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회봉사 고지의무 등 사회봉사 제도 활성화〉
■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56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성 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혜련 의원 등 10인
2. 제 출 일 : 2024. 6. 26.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노역 집행 중이던 노역수형자가 건강상의 원인 등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음.

벌금형은 응보 및 예방이라는 형벌의 일반적 기능을 추구하면서도 수형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적인 형벌임을 고려할 때,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중 사망하는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2009년부터 벌금미납자가 노역장에 유치되는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친화적인 제도가 시행 중이나 홍보 부족으로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점, 신청 요건인 경제적 능력에 대한 기준과 판단 근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집행기간이 6개월로 짧은 점 등을 이유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

이에 검사가 벌금을 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집행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사회봉사 신청요건인 경제적 능력에 대한 판단 근거와 기준을 하위법

령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봉사제도를 활성화하고 노역
장 유치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사회봉사 고지의무 신설 등 사회봉사 제도 활성화>

현행	개정안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② (생략)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사회봉사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신청서식 및 서식에 적을 내용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u><신설></u>	③ 제1항의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의 기준, 신청에 필요한 서류----- ----- -----. 제4조의2(사회봉사 고지의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따른 벌금형의 집행 명령시 경제적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11조(사회봉사의 집행기간) 사회봉사의 집행은 사회봉사가 허가된 날부터 <u>6개월</u>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의 허가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그 기간을 연장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1조(사회봉사의 집행기간) ----- ----- ----- <u>1년</u> -----. ----- ----- -----.

- 개정안은 ①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② 사회봉사 집행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③
사회봉사의 신청요건인 경제적 능력에 관한 판단 근거와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노역장 유치에
따른 범죄 학습, 가족관계 단절, 구금시설 과밀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2009년 제정되었고,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사람에게 노역장 유치에 앞서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형법」 제69조제2항¹⁾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는 것임.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제도는 500만원²⁾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
았으나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
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것임. 사회봉사 제도
의 주요 활동으로는 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 계층의 주거환경

1)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2) 대통령령(제30322호) 개정으로 2020년 1월 7일부터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 벌금의 상한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봉사 신청을 할 수 있게 됨.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사회봉사의 신청과 벌금액)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벌금형의 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개선 활동, 농어촌 일손 돕기, 폭설·폭우 시 재해복구 등의 활동을 들 수 있음.

- 그런데, 최근 5년간 500만원 이하 벌금 선고 건수 및 사회봉사 접수 현황을 보면, 사회봉사 비율이 매년 1.4%에서 2.1%에 머무르는 등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사회봉사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 사회봉사 접수 현황 >

(단위 : 건, %)

구분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벌금형 선고 (500만원 이하)	518,776	453,825	410,780	436,253	458,931
사회봉사 접수건수	7,615 (1.5)	9,424 (2.1)	6,763 (1.6)	5,921 (1.4)	6,601 (1.4)

* 자료: 대검찰청

* 사회봉사 비율(벌금형 선고건수/사회봉사 접수건수)

- 사회봉사 제도 활용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① 2009년부터 시행 중이나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저조하여 제도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점, ② 경제적 능력 여부의 판단 기준과 근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벌금형 확정자 본인이 신청요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점 및 ③ 평일 주간에 집행하는 원칙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과 병행이 불가능하여 일시적으로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점을 들 수 있음.

- 개정안과 같이 벌금형 집행 주체인 검사가 사회봉사 제도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경제적 능력에 대한 기준과 판단 근거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대상자가 사회봉사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봉사 집행 기간을 6개월³⁾에서 1년으로 연장하여 대상자의 생업을 고려한 탄력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면, 사회봉사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의 문구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현행법은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받아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벌금미납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제6조), 검사는 사회봉사의 청구를 신청한 벌금미납자에게 수입원 등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면 법원에 사회봉사의 허가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5조), 이와 달리 벌금미납자가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는 명시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안 제4조제3항은 벌금미납자가 사회봉사를 신청함에 있어 요건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해되므로, 그러한 의미라면

3) 실무상 법원의 허가 후 대상자에게 결정문 송부 시까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6개월의 집행 기간이 현실적으로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시행 성과와 발전방안』, 2011, p102)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신청에 관한 근거규정인 제4조제1항을
수정하여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벌금납부가 곤란한 벌금미납자’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 개정의 취지를 분명
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65